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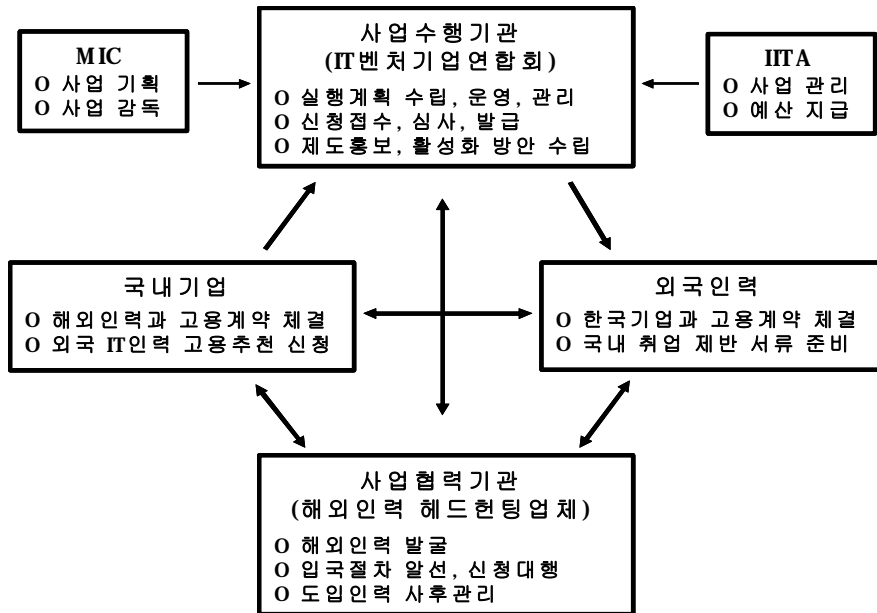
IT분야 해외인력 고용추천사업

1.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

□ 사업의 개요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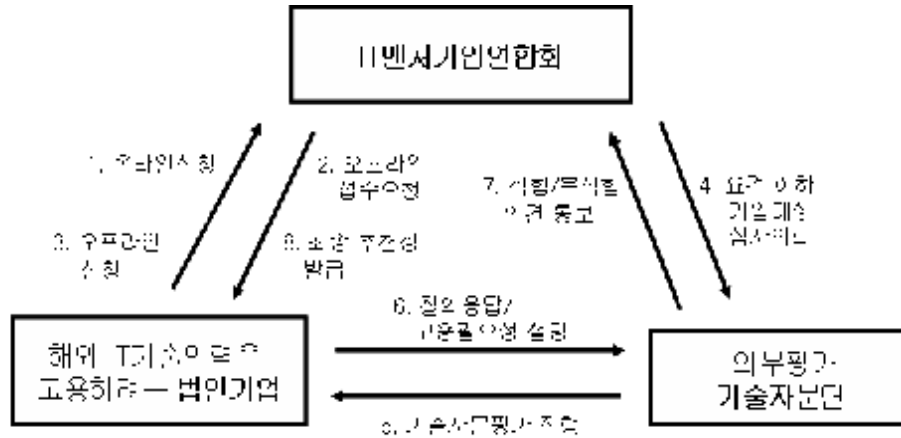
- 국내기업이 **IT**분야 해외기술인력의 고용을 희망할 경우 기업과 도입인력에 대한 적합심사를 통해 사증(**E7**) 발급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고용추천장을 심사하여 발급하고 제도홍보 및 인력사후관리 등의 사업 활성화 제반활동 수행
- 해외 **IT**전문인력의 발굴 및 국내유치지원을 위한 고용추천장 발급을 통해 **IT**분야 전문 인력난 해소와 우수기술 확보 도모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천심사 및 발급체계

- 발급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해외 **IT**인력 고용예정기업에게 발급하던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**IT**벤처기업연합회장의 고용추천서로 변경하여 발급



※ 외부평가는 신설법인, 전년도 매출실적 없는 기업, 영업손실 과다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진행

□ 추천심사 대상 및 자격기준

- 신청대상 : 해외 **IT**기술인력을 고용하려는 법인기업
 - 피고용 외국인 자격기준
 - **IT** 관련분야에 **5년**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개발 엔지니어 또는 해외 마케팅분야 인력
 - **IT**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**2년**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개발 엔지니어 또는 해외 마케팅분야 인력
(국내 학사학위 소지자는 종사경력 없어도 가능)
 - **IT** 관련학과의 석사이상 학력소지자인 기술개발 엔지니어
(해당분야 종사경력 없어도 가능)
- ※ **IT**관련학과 : 전기, 전자, 유무선 정보통신, 컴퓨터 공학 및 응용, 웹디자인 등

□ 고용추천 심사기준

- 업체 심사항목
 - 규모 및 사업실적 (자본금, 매출액, 영업이익, 종업원수)
 - 사업내용의 국내경제기여도 및 향후 전망
 - 향후 사업계획 및 인력활용계획
 - 사업수행 능력 (기업의 조직도 등)
 - 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인증, 기업부설연구소 여부
- 피고용인 심사항목
 - 국적 (**IT**기술의 선·중·후진국 수준 여부)

- 학력 (대졸이상 원칙으로, 현지 대학의 인지도)
- 전공 (IT관련 여부)
- 경력 (년수, 해당분야 업적, 경력기업의 지명도)
- 보유기술의 국내수요도 (해당기술의 국내부족)
- 국내인력으로의 대체가능 여부
- 경력과 초청업체의 사업내용과의 상응 여부

□ 추천심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1차 온라인 신청

- 신청 : 웹사이트(www.itcard.or.kr)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
- 제출서류 : 이력서, 초청사유서, 인력활용계획서(온라인 업로드)

○ 2차 오프라인 신청

- 신청 : 1차 온라인 심사 통과기업 서류접수
- 제출서류
 - 발급신청서(공문 접수)
 - 회사 관련서류
 - (회사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전년도 재무제표)
 - 피고용 예정자 관련서류
 - (이력서,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, 여권 등의 사본)
 - 고용계약서, 초청사유서, 인력활용계획서 등
- ※ 사본 제출 시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

□ 추천심사 운영

○ 1차 온라인 서류 접수/심사

- 온라인(www.itcard.or.kr) 접수
- 신청기업 및 피고용 예정자의 기본 자격기준 요건심사
- 온라인 심사결과 공지(웹사이트)
- 신청기업은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심사결과 확인

○ 2차 오프라인 서류 접수/심사

- 우편 및 방문(KOIVA 사무국) 접수
- 구비서류 제출사항 점검
- 신청인력과 업체와의 적합성 여부 심사
- 최종 심사결과의 유선통보

○ **KOIVA** 외부평가 기술자문단 운영

- 기술자문(외부전문가 **Pool** 운영) 심사 요청
 - 기술부문(**IT**분야 기술유무 검토)
 - 회사부문(영업손실기업/매출실적 없는 1년 미만 신설법인 등)
- 기술자문 심사 진행
 - 유선연락을 통한 기술자문 검토의견서(체크리스트 포함) 작성
- 기술자문 심사 결과통지
 - 기술자문 심사 검토의견서에 최종 판정여부 기재(적합/부적합)

□ 추천발급 및 사후관리

○ **IT**벤처기업연합회장의 고용추천장 발급

- 해외 **IT**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추천 검토의견서 작성
- 내부결재 득한 후, 고용추천장 발급
- 고용추천장 발급 통보를 받은 기업은 우편 또는 방문 수령

○ 입국사실확인서(또는 근무처변경보고서) 접수 및 사후관리

- 해외인력 도입기업은 입국 7일 이내에 입국사실확인서 팩스 송부
- 도입기업과의 정기(분기별) 업무협의를 통한 인력 근무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
- **IT**인력 도입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성과 제고